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

연봉등급 직무분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일반직공무원 등(별표 3 및 별표 4를 적용 받는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무공무원	12등급	10등급 · 11등급	9등급	6등급 ~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연구직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공무원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지도사			
전문 경력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 경력관 가군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전문 경력관 가군	전문 경력관 나군		전문 경력관 다군	
경찰 공무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 공무원	소방 정감	소방감	소 방 준 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우정 1급·2급	우정 3급~6급	우정 7급	우정 8급	우정 9급

비고: 위의 연봉등급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분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연구사·지도사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봉등급을 정한다.